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90

발의연월일: 2021. 5. 26.

발 의 자:어기구·김정호·이병훈

박 정・허종식・조정훈

박상혁 · 서삼석 · 김승원

윤재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선원정책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.

그러나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의 교육 훈련은 시행하고 있으나, 선원 및 선원을 관리하는 자 등에 대한 선원의 노동권·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마련이요구되고 있음.

이에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, 선원·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하여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07조제

2항제1호차목 및 제116조제3항ㆍ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7조제2항제1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차.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(교육기관의 운영, 인력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·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다)

제116조의 제목 "(선원의 교육훈련)"을 "(선원 등의 교육훈련)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선원, 선원이 되려는 사람,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인사·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,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7조(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	제107조(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
립 등) ① (생 략)	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선원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	②
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	
다.	
1. 선원복지에 관한 사항	1
가. ~ 자. (생 략)	가. ~ 자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차.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
	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(교
	육기관의 운영, 인력의 양
	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연
	구・개발 지원 등을 포함
	<u>한다)</u>
<u>차.</u> (생 략)	<u>카.</u> (현행 차목과 같음)
2. • 3. (생 략)	2.•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16조 <u>(선원의 교육훈련)</u> ①·②	제116조(선원 등의 교육훈련) ①
(생 략)	•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선원, 선원이 되려는 사람,
	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
	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
	인사·노무 업무를 담당하는
	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
	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

<신 설>	<u>다.</u>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,
<u>\C =/</u>	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
	<u>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</u>